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

—法律·施行令·告示—

調査部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1975年 12月 31日]
〔法律 第2798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物價의 安定을 期하고 公正하며 自由로운 競爭秩序를 確立함으로써 消費者의 権益을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 및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最高價格의 指定等) ①政府는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특히 緊要한 物品의 價格, 不動產等의 貸貸料 또는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額(이하 “最高價格”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最高價格은 生產段階, 都賣段階, 小賣段階等 去來段階別 및 地域別로 指定할 수 있다.

③政府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한 最高價格을 계속 維持할 事由가 없어졌다고 認定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最高價格를 指定하거나 廢止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條 (價格의 表示) 主務長官은 消費者의 保護 또는 公正한 去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物品, 生產·販賣하거나 그 買賣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用役의 提供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를 表示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4條 (公共料金等의 決定) ①法律에 의거하거나事實上國家가 獨點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의 專賣價格 및 事業料金(이하 “公共料金”이라 한다)을 決定할 때에는 主務長官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主務長官은 다른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價格이나 其他의 料金(手數料를 包含한다)을 決定·承認·認可 또는 許可할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영위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의 料金을 決定할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5條 (獨寡占事業者의 價格申告) ①일정한 事業分野의 市場을 支配함으로써 實質的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단독 또는 소시의 事業者(이하 “獨寡占事業者”라 한다)가 그 物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獨寡占價格”라 한다)를 決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이를 主務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獨寡占價格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主務長官은 獨寡占事業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申告한 獨寡占價格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獨寡占價格의 變更를 命한다. 다만, 變更命令을 받지 않은 申告價格은 主務長官이 決定한 價格으로 본다.

③主務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獨寡占事業者에 대하여는 그 獨寡占價格을指定한다.

④第1項의 규정에 의한 獨寡占事業 및 獨寡占事業者의範圍와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條 (緊急需給調整措置) ①政府는 物價의 急激한 上升과 物品의 供給不足으로 國民生活의 安定 및 國民經濟의 원활한 運營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의 事業者나 輸入者 또는 運送이나 保管을 業으로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5月 以內의 期間을 정하여 다음 名號의 1에 該當하는 措置(이하 “緊急需給調整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生產計劃의 樹立, 實施 및 變更에 관한 指示
2. 供給 및 出庫에 관한 指示
3. 輸出入의 調節에 관한 指示
4. 運送·保管 또는 讓渡에 관한 指示
5. 流通組織의 整備, 流通段階의 單純化 및 流通設施의 改善에 관한 指示

②政府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한 후 그 措置를 한 事由가 없어졌다고 認定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解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7條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事業者は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公正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하여 不公正한 去來行爲로 指定한 行爲(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不當하게 去來相對方을 差別的으로 取扱하는 行爲
2. 不當하게 競爭者의 고객을 自己와 去來하도록 강제하는 行爲
3. 自己의 去來上의 지위를 不當하게 利用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
4. 去來相對方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구속하는 條件으로 去來하는 行爲

5.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허위 또는 誇張된 廣告를 하거나 商品의 質 또는 量을 속이는 行爲

6. 폭리를 目的으로 物品을 매점하거나 販賣를 기피하는 行爲

7. 고의로 物品의 生產을 중단 또는 감축하거나 당해 物品의 出庫를 제한하는 行爲

第8條 (競爭制限行爲의 禁止) ①事業者は 契約協定·決議 其他 어떠한 方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一定 事業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이하 “競爭制限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價格을 決定·維持 또는 引上하는 行爲
2. 商品의 販賣條件, 用役의 제공조건 또는 그 代價의 지급조건을 定하는 行爲
3. 商品의 生產·販賣가 出庫의 제한 또는 用役의 제공을 제한하는 行爲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行爲

②事業者が 不況克服·產業合理化 등 不得已한 事由로 競爭制限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競爭制限行爲의 内容 및 그 行爲를 하고자 하는 期間에 관하여 미리 政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政府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競爭制限行爲를 承認한 事由가 없어졌거나, 당해 競爭制限行爲가 經濟狀況의 變動으로 公共의 利益을 해하게 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承認을 取消하거나 一定한 期間 그 行爲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9條 (是正命令 等) 政府는 第7條 또는 第8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나 競爭制限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그 行爲의 是正·또는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第10條 (物價安定委員會의 設置)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事項의 審議·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이 物價安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11條 (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되고, 委員, 財務部長官·農水產部長官·商工部長官·建設部長官保健社會部長官·交通部長官·遞信部長官과 經濟 또는 法律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③委員中 當然職委員이 아닌 委員은 그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の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2條 (委員會의 議決事項) 다음 각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第2條 第1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最高價格의 指定과 廢止에 관한 事項
2. 第4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公共料金의 決定에 관한 事項
3. 第5條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獨寡占價格의 變更와 指定에 관한 事項
4. 第5條 第4項의 규정에 의한 獨寡占事業 및 獨寡占事業者의 範圍와 基準에 關한 事項
5. 第6條의 규정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 및 그 解除에 관한 事項
6. 第7條의 규정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의 指定에 관한 事項
7. 第8條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取消와 停止命令에 관한 事項
8. 第9條의 규정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의 命令에 관한 事項
9. 第18條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한 事項
10. 第31條의 규정에 의한 告發에 관한 事項

第13條 (意見聽取) 委員會는 第12條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함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利害關係인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4條 (手當)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5條 (運營規定) 이 法의 규정한 것 이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報告 및 檢查 等) ①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

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報告 또는 關係資料의 提出을 命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나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檢查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7條 (資料의 内容等 目的外 利用禁止) 이 法에 의한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資料의 内容이나 檢查에 의하여 知得한 内容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外에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처분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主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로부터 15日 以內, 그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③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第19條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 이 法에 규정한 主務部長官의 權限中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에 대하여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이를 行使할 수 있다.

第20條 (權限의 委任)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이나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21條 (適用除外) 特定의 事業에 關하여 特別한 法律이 있는 경우에 그 事業者가 당해 法律에 의하여 행하는 行爲에 대하여는 第7條 및 第8條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2條 (罰則適用의 擬制) 委員會의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其他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3條 (不當利得稅法의 適用) 第2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最高價格과 第5條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이 決定·變更 및 指定

한價格은 각각 이를 不當利得稅法 第1條의 규정에 의한 政府決定價格으로 본다.

第24條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第2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및 第5條 第2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決定價格을 超過하여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한 者
2. 第5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한 獨寡占價格의 指定價格을 超過하여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한 者

②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25條 (同前) ①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 第3項 또는 第9條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競爭制限行爲나 不公正去來行爲를 계속한 者
2. 第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에 違反한 者

②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26條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규정에 違反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
2. 第8條 第1項의 규정에 違反하여 競爭制限行爲를 한 者

第27條 (同前)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檢查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6月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8條 (同前) 第17條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 (過怠料)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5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6條 第7項의 규정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者

4.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資料를 提出한 者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 대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할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 (告發) 第24條 대지 第26條의 罪는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第32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则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 및 第8條의 규정은 이 法 施行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公共料金審查委員會 設置法 및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公共料金審查委員會 設置法에 의한 公共料金審查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委員會가 設置될 때까지 存續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實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引用된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은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로 보며, 公共料金審查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委員會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에 의한 最高價格은 이 法에 의한 最高價格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前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의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한다.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1976年 3月 13日]
[大統領令第8021號]

第1條 (目的) 이영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最高價格의 指定 및 廢止) 법 제 2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파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파 그 폐지는 경제기획원장판이 행한다.

第3條 (最高價格指定등의 告示) ①주무부장관(제 2조 단서의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판, 이하 조 및 제 4 조에서 같다)이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 2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체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4條 (最高價格의 變更)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전의 변동과 원자재 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第5條 (價格등의 表示) ①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 대상 및 표시의 문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第6條 (公共料金 등) ①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요금
2. 전기요금
3. 제조담배(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특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격

4. 우편요금·전신요금 및 전화요금(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전기통신요금을 제외한다)

②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공업용수 사용료
3. 도시가스 요금
4. 치하철 운임
5. 시립병원·도립병원 등의 의료수가
6.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이외에 경제기획원장판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第7條 (獨寡占事業者の範囲 등) ①법 제 5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판이 이를 고시한다.

第8條 (獨寡占價格의 申告) ①독과점사업자가 그 독과점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독과점가격에 의한 거래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과점가격을 인하한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판이 고시한 독과점사업자는 그 고시일 현재의 독과점가격을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일 현재의 독과점가격이 고시일 30일 전의 가격보다 인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 2 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독과점사업자는 고시일 현재의 독과점가격과 고시일 30일 전의 가격을 고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사업자가 보고한 고시일 현재의 독과점가격이 고시일 30일 전의 가격보다 인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 5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한 독

과점가격으로 본다.

⑤주무부장관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나 보고서의 사본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 9 條 (獨寡占價格의 審査) ①주무부장관은 제 8 조제 1 항 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생산비 ·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2. 판매비용 및 이윤
3. 거래방법 및 거래조건
4. 생산성의 변화
5. 국제가격과의 비교
6. 수급전망

7.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가격의 심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第10條 (獨寡占價格의 決定과 變更) ①주무부장관은 제 8 조제 1 항 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과점가격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별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독과점가격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가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독과점가격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독과점가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이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 독과점가격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독과점가격을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獨寡占價格의 指定) ①주무부장관이 별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 그 독과점가격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하고자 하는 독과점가격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독과점가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 10 조제 5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동항 중 제 4 항은 제 2 항으로 본다.

第12條 (獨寡占價格등의 通報 및 調査) ①주무부장관은 제 2 조 및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 ·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제 10 조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 또는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가격을 결정 · 변경 또는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 1회 제 1 항의 최고가격 또는 독과점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3條 (緊急需給調整措置) ①별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14條 (不公正去來行爲의 指定)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별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第15條 (告示의 方法) 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7조제2항·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第16條 (競爭制限行為의 承認) ①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승인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 행위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제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의 해당여부
2. 경쟁제한 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것인가의 여부
3.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의 적정여부
4. 일반소비자와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가의 여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의 승인을 연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17條 (是正命令 등) 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다.

第18條 (違反行爲의 申告 등) ①사업자가 법제7조 또는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제8조제3항 또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한 후 그 신고 내용

과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第19條 (委員長의 職務) ①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20條 (委員會의 會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第21條 (實務委員會) ①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미리 심의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22條 (幹事)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기획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23條 (資料의 提出命令 등) ①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4條 (消費者保護)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전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조장하고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第25條 (權限의 委任)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 2조제 1항·제 3항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 법제 5조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가격의 신고수리·변경명령 및 그 지정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第26條 (細部事項)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영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命令)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8조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31일 현재의 가격을 고시일 30일전의 가격으로 본다.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獨寡占事業 및 獨寡占事業者の範圍와 基準에 관한 規程 (制定) [1976年 3月 29日]
[大統領令第8046號]

第1條 (目的) 이 영은 물가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 사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條 (獨寡占事業者の範圍와 基準 등)

①독과점 사업자라 함은 동종의 물품 또는 용역(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공급(용역)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각 거래단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 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자를 말한다

1. 1년간의 물품의 총출하액 또는 용역의 총공급액(이하 “물품 또는 용역의 총거래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출하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1년간의 물품 또는 용역의 총거래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3이하의 사업자가 출하 또는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총거래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출하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현저히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등 그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단독 또는 소수의 사업자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서 20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1사업자로 본다.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액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께 다른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동일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되고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임원을 겸하거나, 사업자가 그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임원을 겸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액이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 또는 채무 보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서 국내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어 있는 지역별 시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독과점 사업이라 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3條 (適用除外)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업자는 제 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과점 사업자로 보지 아니 한다.

1. 1년간의 물품 또는 용역의 총거래액이 경제기획원 장관이 물가 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법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 물품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을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하여 수출 자유지역내에 입주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진량을 수출하는 사업자

4.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협동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중앙회
6.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중앙회

第4條 (獨寡占事業者の告示등) ①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회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 사업자를 고시한다.

②경제기획원 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 사업자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새로이 독과점 사업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자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독과점 사업자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다.

③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제 2 호 및 제 3 조 제 1 호에서 1년간이라 함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第5條 (細部事項) 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한다.

附 則

이영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제기획원고시 제 7 호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

1979년 7월 22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7월 22일 경제기획원장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 거래거절: 일정한 사업분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이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 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의 도산매 가격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쟁업체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것.

2. 차별가격: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할증, 할인을 포함)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입하는 것.

3. 집단배척: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집단행위로서 어느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조건

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그려 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4. 거래강제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또는 용역)과 기술상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또는 용역)을 끼워서 매입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등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는 것.

5. 우월적 지위의 남용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① 채권확보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자산 또는 주식의 양도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상대방의 기업운영에 간섭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계약된 물품의 수도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하게 거래내용을 변경하여 거래하는 경우
③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법정 기일이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켜 거래하는 경우

6. 거래처의 제한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기가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제한하여 거래하는 것.

7. 재판매가격 유지 : 경제기획부장관이 일반소비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하여 따로 금지대상품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이외의 거래 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규약 등 구속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것.

8. 허위과장광고 : 물품(또는 용역)의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가격, 수량, 결재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경쟁판례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물품(또는 용역)을 사실과 다르게 중상, 비방하는 등 선전, 광고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거나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9. 매점매석 : 사업자가 국민생활에 중요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것.

10. 생산, 출고 조절 : 물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거나 앙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상향조작하기 위하여 그 생산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생산을 감축하거나 또는 물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것.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33號 食品工業

1970年 10月 18日 登錄 바 第355號

1976年 8月 31日 發行

發行兼 編輯人 全仲潤

發行處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3街 59의 22
(영한빌딩 별관 202, 203호)

② 8760 ② 6035

對替口座·서울中央 610501

印刷人 由盛印刷株式會社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冷泉洞 218

② 3791 ② 5826

(隔月刊)